

## 「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」 변경계획 공고

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변경계획을 공지하고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### [주요 변경사항]

- 소득 기준 :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인 자
- 연 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변경 [3 대출 및 이자지원 참조]
- 다자녀 이자지원 금리 변경 : 최대 1.5% [3 대출 및 이자지원 참조]
-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: 최대 30만원 [5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참조]

※ 소득기준 및 대출금리, 이자지원 금리 변경사항은 2024. 7. 30일자 신규대출 신청 및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.

※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은 2024. 7. 30. 이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\* (생애 1회)에 대하여 시행합니다.

\* 대출실행자부터 적용

2024. 7. 30.

서울특별시

## 1. 사업개요

- **사 업 명**: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
- **사업목적**: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차보증금의 대출 이자 지원 및 신규 대출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
- **용자지원 조건**
  - 용자 취급은행 : 국민은행, 하나은행, 신한은행
  - 용자 최대한도 : 최대 3억 원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
    - ※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은 변경공고일('23.5.2.) 이후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
- **용자용도**: 임차보증금(전월세보증금)
  - ※ 당해연도 예산 규모에 따라 일일 신청 건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[4. 신청안내] 참조

## 2. 신청자격

- **신청대상자**: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
  -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
  - 대출신청일<sup>주1)</sup>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<sup>주2)</sup>
    - <sup>주1)</sup>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하며,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 제출
    - <sup>주2)</sup> 예비신혼부부는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, 미제출 시 이자지원은 중단되고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 함
  -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자
  -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<sup>주3)</sup>
    - <sup>주3)</sup> **붙임1.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 주택수 산정기준 관련 내용 참고**
    - ※ 대출명의로자(=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=추천서 신청자)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, 세대주가 아닌 자를 세대주로 인정하는 요건은 FAQ 21페이지 참고

○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

- ※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(예비)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,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 간 이용 가능
- ※ 청년안심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(또는 신청예정자)는 중복 신청 불가

□ **대상주택:**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

○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<sup>주3)</sup>

<sup>주3)</sup> 「노인복지법」 부칙 제4조의3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전 「건축법」에 따른 허가나 「주택법」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

< 필 독 >

- \*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(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은행 사전상담 필요)
- \*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
- \*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<sup>주4)</sup>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

<sup>주4)</sup>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서울주택도시공사(SH), 서울리츠(REITs) 등

### 3. 대출 및 이차지원

□ **대출신청시기**

- 신규: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
- 계약갱신: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
- ※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(대출실행일) 2개월 전부터 가능함

□ **대출한도**

- 최대 3억원 이내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 ※'23.5.2.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
- ※ 단,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 (국민, 하나, 신한은행)에서 사전상담 필요

□ **대출금리:** ① 기준금리 + ② 가산금리

① 기준금리(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)      ② 가산금리(1.45%)

※ COFIX금리 :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

※ 가산금리(1.45%) 변경은 '24.7.30.이후 신규대출 신청 및 대출연장신청 건부터 적용

□ **본인 부담금리:** 대출금리 - 이자지원금리 = 실부담금리

□ **보증방식**

○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(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)

※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의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

□ **이자지원금리:** 최대 연 4.5% 이하

( '24.7.30. 신규대출 신청 및 대출연장 신청부터 적용)

※ 본인 부담금리가 연 1.0%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.0% 적용

○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: 최대 연 3.0% 이하

|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           | 지원금리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0 ~ 3천만원 이하             | 3.0% |
| 3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       | 2.5% |
| 6천만원 초과 ~ 9천만원 이하       | 2.0% |
| 9천만원 초과 ~ 1억 1천만원 이하    | 1.5% |
| 1억 1천만원 초과 ~ 1억 3천만원 이하 | 1.0% |

○ 추가 이자지원금리 : 최대 연 1.5% 이하

①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: 0.2%

② 다자녀가구 : 1자녀 0.5%, 2자녀 1.0%, 3자녀 이상 1.5%

③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: 1.0%

※ ① ~ ③ 유리한 금리 조건 택일(중복 적용 불가)

※ ①은 최초 대출 시에만 적용되며 대출연장 시 적용 안됨

※ ②는 최초 신청 시 임신 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며,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 (단, 신청시점에 임신중인 자녀로 추가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해당되지 않음)

- ※ 지원대상 자녀 나이는 민법상 미성년 자격 기준인 만 19세 미만임
  - 최초 신청 시 : 서울시 용자추천서 발급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
  - 기한연장 시 : 기한연장 대출기간 시작일 기준 만 19세 미만
- ※ ③은 신규 신청은 대출 신청일<sup>주1)</sup> 기준, 대출 연장은 (만기일+1일) 기준으로 동거기간(전입 기간) 3년 이상 인지 확인

<sup>주1)</sup>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하며,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 제출

□ **이자지원 기간:** 최장 10년 이내 (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)

- 기본지원은 2년+2년 이내 (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)

※ 2년 + 2년 대출이용 후 대출기간 중 자녀 수 증가가 없는 경우는 대출 상환

- 대출기간 중 출산·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(2년씩 3회)이내 연장지원
- 이자지원 중단사유

| 대출기간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한연장 시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결혼예정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<br>(중단일 : 대출실행 후 6개월 경과일) | ①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초과 |
| ②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<br>(중단일 : 주민등록 전출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       |
| ③ 공공임대주택 입주<br>(중단일 : 주민등록 전출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       |
| ④ 임대차계약 종료<br>(중단일 : 임대차계약 종료/전출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|
| ※ ①~④의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, 미통보 및 통보 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※ 대출 실행 후 주택 취득 시 대출상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FAQ를 반드시 참고

□ **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**

- 적용 대상자: ① ~ ④ 모두 만족한 자

- ① 시행일 기준 대출만기 도래자 중
- ②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대출연장 불가일 경우

-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초과, 이혼·사별, 자녀 미출산, 서울 지역 외 전출, 공공임대주택 입주

③ 전세사기, 깡통전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임차인으로써,

④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소송경매 등의 법적절차 진행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

#### ○ 지원사항

- 임차권등기명령 시 : 기존 이자 지원 지속

- 소송·경매 진행 시 : 무이자 (서울시 이자 전액 부담)

※ 소송·경매 진행 중이라도 대출만기 도래 전이면 무이자 지원으로 변경 불가

○ 증빙서류: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, 경매/공매 개시 결정문, 소송접수 증명원,

등기부등본(임차권등기명령, 경매진행사항 등 기재) 등 ※하단표 참고

#### □ 공통 서류

○ 주민등록 등·초본(1개월이내 발급분),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, 계약해지 통보서류(내용증명 등), 등기부등본(1개월이내 발급분)

#### □ 유형별 서류

○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경우 (아래 각 호 중 하나)

1.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(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)

※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제출 시 대출연장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

2.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법원결정문 사본

3.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등기부등본

○ 임차주택에 경매/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(아래 각 호 중 하나)

1. 경매/공매 개시 결정문 또는 경매/공매 통지서

2. 압류 및 경매/공매개시결정 또는 공고가 기재된 등기부등본

3.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서,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접수증명원

4. 매각물건명세서 (주거임차인으로서 점유자 성명, 임대차기간, 보증금, 전입일자, 확정일자, 배당요구일자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)

○ 임차주택에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(아래 각 호 중 하나)

1. 소송접수 증명원 / 2. 소송 계속 증명원 / 3. 소제기 증명원

## ○ 기타사항

- 소송,경매의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선행 후 소송·경매 절차 진행 필요
- 보증금 미반환 관련 소송·경매 사유는 임차인 본인이 직접 진행한 것에 한함
- 대출연장은 6개월 단위로 진행(관련 서류) 사항 확인(지점)후 최대 4년 연장 처리  
 ※ 임차권등기명령 관련은 최대 2회(1회당, 6개월이내) 가능하고 그 이후는 반드시  
 소송·경매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
- 최대 지원 기간(4년) 경과 및 법적 절차 진행 종료 시 즉시 상환

## 4. 신청안내

### □ 신청절차

| 단 계                | 주 체                  | 단계별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대출한도 조회 등<br>사전상담  | 신청자                  | 가까운 협약은행(국민, 신한, 하나) 지점 방문 본인<br>대출신청 가능금액 및 소득요건 등 대출관련 사전상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전세계약               | 신청자                  | 대출한도, 대출가능여부 등 협약은행 상담결과를<br>고려하여 임차 주택 조사, 전세계약 체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추천서<br>발급 신청       | 신청자                  | 서울주거포털(온라인)에 접속하여 신청자 개인정보 등<br>입력 후 대출추천서 발급 신청<br><br>* 추천서 신청 서류<br>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<br>임신사실확인서(임신중인 경우), 임대차계약서 및<br>지급영수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신청서 검토 및<br>추천서 발급 | 서울시                  | 첨부서류 확인 등 자격 검토 및 추천서 발급<br>(근무일 기준 3일 내외 소요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출신청               | 신청자                  | 서울시 발급 추천서와 본인 신분증, 소득 증빙자료,<br>임차주택 계약서 등 지참, 은행에 대출 신청<br><br>* 대출 신청 서류<br>용자추천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<br>혼인관계증명서, 임대차계약서 및 지급영수증, 부동산<br>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재직증명서(사업자등록증명원),<br>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소득금액증명) 등 |
| 대출심사               | 협약은행<br>(국민, 신한, 하나) | 추천서, 기타 제출 자료 등 검토 및 주택 심사 후 대출<br>승인여부 결정 (1개월 내외 소요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전세자금보증             | 한국주택<br>금융공사(HF)     | 협약은행이 검토한 대출신청자 자격 및 대출심사 내용을<br>토대로 적합할 경우 전세자금보증 확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출금 입금             | 협약은행                 | 은행 최종 대출심사 결과 승인 시 입주일에 맞추어<br>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※ 대출 연장 시에는 서울시 추천서를 다시 신청·발급하지 않아도 되며, 추가 발급 불가능
- ※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 기준 2개월 전, 은행 대출(대출 연장도 동일) 접수는 1개월 전부터 가능 (협약은행의 상황에 따라 대출실행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)

#### □ 추천서 신청기간 : 상시

- ※ 일일 신청건수(60건) 초과 시 당일 신청 불가, 익일 신청할 수 있음

#### □ 추천서 접수방법 :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(<http://housing.seoul.go.kr>)

#### □ 신청서류 \*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

- ① 주민등록등본 1부(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)
-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(신청자, 배우자 각 1부) \*특정 아닌 ‘일반’ 또는 ‘상세’ 발급분
-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(신청자/단,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, 배우자 각 1부)

- ※ 단, 예비신혼부부 상태에서도 발급가능하며, 신청자, 배우자 각 1부씩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 필요, 예식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내 반드시 해당 은행에 혼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

#### ④ 임대차계약서[계약금(보증금의 5% 이상) 지급 영수증 포함] 1부

- ※ 갱신계약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 계약서 함께 첨부
- ※ 추천서 심사 및 협약 은행의 대출 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
#### □ 문 의 처

- 대출문의(대출한도,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, 소득조건) : 협약은행 콜센터 (국민은행 ☎ 1599-9999, 하나은행 ☎ 1599-2222, 신한은행 ☎ 1599-8000)
- 서울주거포털 이용 문의(서울주거포털 오류,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) : 다산콜센터 (☎ 02-120),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(☎ 02-2133-1594~6)

## 5.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- 지원 대상자 : 본 사업 신규 대출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
  - '24.7.30.이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규 대출자(생애 1회) \*대출실행자

- 현재 거주지 한국주택금융공사(HF)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
- 대출 신규일('24.7.30.이후)로부터 90일 이내<sup>주5)</sup> 보증료 지원 신청한 자

<sup>주5)</sup> 90일 도래일이 휴일인 경우, 휴일의 그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

- ※ 대출 신규일은 은행 발급 금융거래확인서를 통해 확인 예정
- ※ 본 대출은 서울시-협약은행-한국주택금융공사(HF) 간의 협약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HF 반환보증 상품만 지원 가능하며 타 기관(HUG, SGD) 상품은 제외
- ※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대출 완료 후, 대출 실행 은행에서 상담 및 신청

| 지원 제외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 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여부 확인 가능</li> </ul> </li> <li>● 기타 국토교통부, 자치구 등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및 자치구 자체 지원사업 중복 청구 불가</li> <li>- 거주 자치구에 지원 사실 통보 예정이며 중복 수령 시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에 의거 환수</li> </ul> </li> </ul>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
- **지원 내용** :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(최대 30만원 한도, 연도별 예산 소진 시까지)
- **신청방법** : 서울주거포털(housing.seoul.go.kr) 홈페이지 신청

- 서울주거포털 접속 및 로그인 → [화면상단] 청년·신혼부부 지원 →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→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바로가기 →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신청하기 → 신청자격 확인 → 약관동의 → 개인정보 및 구비서류 등록 → 신청 원료(카톡알림) → 신청에 따른 지급 승인 여부 통보(마이페이지)
- ※ 신청일 기준 지급 승인 등 결과 통보는 3일 내외(근무일 기준) 소요되며 서류 미비 시 승인 거부 및 제출 서류 보완 가능
- ※ 단, 근무일 기준 1일 심사 건은 40건 내외로 신청이 많을 경우 결과 통보가 지연될 수 있음

## □ 제출서류

- 금융거래확인서, 임차보증금반환보증서(전세지킴이보증서),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영수증, 대출자 본인명의 통장 사본, 주민등록등본,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사항증명서

< 서류발급처 >

- 금융거래확인서 : 대출 실행 은행
- 임차보증금반환보증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영수증 : 대출 실행 은행 직접 방문 수령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(HF) 홈페이지에서 발급
- 주민등록등본 :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
- 등기사항전부증명서 : 지방법원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(일부 동주민센터 발급 가능)

□ **지급일자** : 지급 승인 일 기준 익월 20일(휴일경우, 휴일그다음 근무일)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

□ **신청 및 절차** \*대출 완료 후 대출 실행 은행 방문하여 반환보증 가입 신청 가능

| 단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대출 실행<br>(협약은행: 국민, 신한, 하나) | ▶ (은 행) 대출 실행<br>▶ (신청자) 금융거래확인서 수령     | 대출 승인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반환보증 가입 신청<br>(신청자→은행)      | ▶ (신청자) 반환보증 신청<br>▶ (은 행) 반환보증 상담      | 대출 승인 이후<br>(사업 시행일 이후 대출자부터 가능) |
| ③ 보증심사 및 통보<br>(한국주택금융공사)     | ▶ (공 사) 보증심사 및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| 30일 내외 소요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④ 보증료 납부<br>(신청자→은행)          | ▶ (신청자) 보증료 납부<br>▶ (은행/공사) 보증서, 영수증 배부 | 보증 승인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⑤ 보증료 지원 신청<br>(신청자→서울시)      | ▶ (신청자) 서울주거포털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| 대출 승인 이후 90일 이내                  |
| ⑥ 지원 심사 및 통보<br>(서울시)         | ▶ (서울시) 지원 심사 및 통보                      | 근무일 기준 3일 내외 소요                  |
| ⑦ 지원금 지급<br>(서울시→신청자)         | ▶ (서울시) 지원금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| 승인완료일 익월 20일 지급                  |

□ **문 의 처**

-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문의 : 협약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 
(국민은행 ☎ 1599-9999, 하나은행 ☎ 1599-2222, 신한은행 ☎ 1599-8000,  
한국주택금융공사(HF) 콜센터 ☎ 1688-8114)
- 보증료 지원 문의 : 서울시 주택정책과(2133-7277)

## 6. 기타사항

-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기재내용이 협약은행에 제출된 서류와 상이하여 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으며, 향후 재신청이 불가능 합니다.
-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연소득, 부채현황, 기존 대출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소득증명과 관련한 서류 및 신청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 기간 연장 시 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 이자를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은행 사정에 따라 대출 및 연장 신청일로부터 대출 실행까지 1~2개월 이내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 대출 실행일로부터 촉박하게 대출 신규 신청을 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하거나 적기 시행이 안될 수 있으며, 대출 연장 시에도 만기일로부터 촉박하게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대출 연체 및 신용도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대출 약정 기간 종료 전 대출금 상환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
- 주택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- 허위·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거나 동일 건으로 국토교통부, 자치구 보증료 지원을 중복 청구 시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사항은 협약은행 콜센터(국민은행 ☎ 1599-9999, 하나은행 ☎ 1599-2222, 신한은행 ☎ 1599-8000)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(☎ 02-120),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(☎ 02-2133-1594~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FAQ  
2. 협약은행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